

■ 농지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9. 6. 25.>

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·규모 등(제36조 관련)

시설의 범위	설치자의 범위	규모
1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주택인 세대의 세대주	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
2.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	· 농업인 :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이하 · 농업법인 : 법인당 7천 제곱미터(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 제곱미터) 이하
3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	· 농업인 :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이하 · 농업법인 : 법인당 7천 제곱미터
4.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·선과장·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·가공시설(창고·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·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·어업인	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

한다)			
5. 구성원(조합원)이 생산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	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	
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	기본법」에 따른 생산자단		
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	체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		
에 설치하는 집하장·선	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		
과장·판매장·창고 또	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		
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	업회사법인, 「수산업협동		
물 유통·가공시설	조합법」에 따른 어촌계·		
	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		
	양회 또는 「농어업경영체		
	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		
	른」 제16조에 따른 영어		
	조합법인		
6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	제한없음	제한없음	
치하는 법 제32조제1항			
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			
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			
편의시설 및 이용시설			
7. 제29조제2항제2호에	비영리법인	법인당 7천제곱미터(농업	
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		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	
시험·연구시설		천제곱미터) 이하	
8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	
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미터 이하	
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		

	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	
	대의 세대원인 어업인, 농	
	업법인 및 「농어업경영체	
	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	
	률」 제16조에 따른 영어	
	조합법인	
9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
하는 제29조제5항제5호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제곱미터 이하
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	
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	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	
제외한 시설	대의 세대원인 어업인, 농	
	업법인 및 「농어업경영체	
	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	
	률」 제16조에 따른 영어	
	조합법인	

비고

-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.
-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.